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91호로 2013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이 현안업무로 대두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향상과 내실있는 일자리 발굴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일자리 추진단을 정식기구화하고 노인복지과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정식기구화 : 일자리추진단 ➡ 일자리정책과(안 제6조)

나. 부서 명칭변경 : 노인복지과 ➡ 어르신복지과(안 제7조)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주요 현안업무로 부각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내실있는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정식 기구화하고, 우리구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 정식기구화 하고 부서 명칭을 “일자리정책과”로 함.
- 안 제7조에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함.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3]

##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중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